

구미형 소재·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사업
개방형 혁신랩
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

2020.11

구미전자정보기술원

목 차

1. 과업의 목적	3
2. 과업의 개요	3
3. 과업의 범위	3
4. 과업기간	3
5. 과업수행조건	3
6. 세부과업내용	5
가. 실시설계	5
1) 일반사항	
2) 설계도서 작성	
3) 공정별 세부내용	
가) 건축	
나) 기계설비	
다) 전기	
라) 통신	
마) 소방	
7. 기타사항	6
8. 성과품 제출	6

1. 과업의 목적

본 설계용역 업무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내 진흥관 1층~4층 일부 공간을 개방형 혁신랩을 구축하여 리모델링하며 기업지원 전용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도 신산업 생태계 창출형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과업의 개요

가. 사업명 : 구미형 소재·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개방형혁신랩 실시설계용역

나. 위치 :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
다. 사업내용

- 리모델링 공사 1식

라. 총공사비 : 350백만원

3. 과업의 범위

건축, 기계, 전기, 통신, 소방설비 실시설계

4. 과업기간

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.(단, 각종 설계심의 및 승인, 건축협의 등 행정 일정에 소요 되는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한다.)

5. 과업수행조건

가. 용역수행자는 수임의 의무와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.

나.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, 제반법규 및 필요한 자료수집을 철저히 하여 설계 작업에 임한다.

다. 용역수행자는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) 착수 신고서

- 기술용역공정예정표

-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

-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

- 라. 본 용역의 설계도서 범위와 대가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635호 '2020.09.14.),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대가기준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21호 '17.02.09)을 기초자료로 사업내용 및 예산 범위내에서 산출하였으며 건축법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,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.
- 마.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진행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1) 현장여건상 용역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
 - 2) 용역수행자가 용역수행 중 특별한 사정으로 업무보고 또는 협의가 필요하거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바. 설계진행 중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국내외 선진사례 등의 신기술·신공법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.
- 사. 본 과업의 설계도서와 자료일체,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를 위한 권한 일체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소유로 한다.
- 아.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인명피해, 기타 공사 진행상의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,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자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.

6. 세부과업내용

가. 실시설계

1) 일반사항

입찰,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공사의 범위, 양, 재료 및 질감 등을 작성 제출 한다.

(가) 건축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와 제반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

(나)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이어야 하며, 유지관리 및 운영에 편리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한다.

(다) 사용자재

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 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, 건축물의 구조 안전, 방화, 위행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표시품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.

2) 설계도서의 작성

(별표)설계도서의 작성과 같음

3) 공종별 세부내용

가) 건 축

(1) 설계범위

-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연계하고 건축 연면적은 관련 법규 및 예산 범위내로 계획한다.
- 1층 로비부분은 개방형 회의실 공간구성.
- 2층 다목적세미나실 비대면회의실 2실, Creative studio실 조성.
- 4층 회의실,사무실 조성.

(2) 세부내용

-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내용과 공사량을 파악하고 건물 유지 효율화를 기한다.
- 기타 노후화된 부분을 개·보수 한다.
- 설계진행 도중 실사용 관계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

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한다.

- 천장 및 벽체, 바닥마감, 조명 및 냉난방, 환기 설비의 형태, 재료, 부착방법은 디자인 개념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.

나) 기계설비

(1) 설계범위

- 냉난방설비 계획
- 급배수설비 계획

(2) 세부내용

- 냉난방 방식은 냉난방부하 계산을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정확하고 적정하게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급수관로는 동파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기히팅코일, 보온, 퇴수밸브 등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한다.
- 난방 및 급수관은 스테인레스관, 동관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질로 하고 오·배수관은 KSD-4307(주철관)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질로 한다.

다) 전 기

(1) 설계범위

- 조명 및 전열, 냉난방 설비 설치

(2) 세부내용

- 고효율 및 KS 인증기준 등을 검토하여 시방기준을 작성한다.
- 실별 전등 스위치 구획을 명확히 한다.
- 환기 및 동파방지동 전열기기는 회로를 단독회로로 구성한다
- 기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.

라) 전기(통신)

(1) 설계범위

- 통신 설비 설치계획

마) 전기(소방)

(1) 설계범위

- 소방설비 계획

7. 기 타 사 항

가.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시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.

나.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서를 당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.

다.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내용을 당시에 보고 협의 후 결정 하여야 한다.

라. 설계서의 납품완성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용역검수를 한 후 용역완료로 보며 용역비는 설계도서 검수 후 100%를 지급한다.

마. 당시는 중대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단시키거나,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용역대가의 변경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.

- 증가의 경우 : 당초대로 지급
- 감소의 경우 : 정산지급

8. 성과품 제출 [건축, 기계설비, 전기, 통신, 소방 공종별 구분 작성]

가. 실시설계

- 1) 설계설명서(A4) 및 시방서, 예정공정표 : 5부
- 2) 설계도면 (A3) : 5부 (2부는 반접)
- 3) 공종별내역서, 수량산출서, 단가산출서, 각종계산서 : 5부
- 4) 심의, 인허가 관련서류 및 기타 당시에서 요구하는 성과품 : 1식

나. 위의 성과품에 대하여 USB화 하여 1매 제출